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
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 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상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특례시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상수탁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고 보상업무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제43조제1항)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7호(종전의 제6호) 중 “광역시”를 “광역시, 특별시”로 한다.

6. 「한국국토정보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3조(보상전문기관 등)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 6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특별시, <u>광역시</u> , 도 및 특 별자치도가 택지개발 및 주택 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 여 설립한 지방공사 ② ~ ⑤ (생 략)	제43조(보상전문기관 등) ① 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「 <u>한국국토정보공사법</u> 」에 따른 <u>한국국토정보공사</u> 7. ----- -- <u>광역시, 특별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409